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81

발의연월일: 2018. 1. 5.

발 의 자:진선미·소병훈·김영호

박찬대 · 김정우 · 남인순

윤관석 · 오제세 · 정성호

신창현 · 김성수 · 박 정

추미애 · 민홍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1
경보설비, <u>피난설비</u> , 소화용	<u>피난구조설비</u>
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	
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	
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	
보설비 및 <u>피난설비</u> 를 말한다)	<u>피난구조설비</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	

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례) ① -----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 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피난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